

#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신진예술인 지원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장애·다문화예술인특화지원

##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1. 28.(수) ~ 2. 19.(목)

포대작품 | 걸 은하수 | 김기태 | 벨벳에 아크릴풀감 | 45x45, 2025

화성특례시  
HWAESONG SPECIAL CITY

화성시문화관광재단  
HWAES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화성예술지원  
HWAESONG ARTS SUPPORT

#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신진예술인지원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 CONTENTS

2026년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추진개요	09
1. 공모 일정 및 대상사업	10
2.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11
3. 지원신청 공통사항	13
사업별 세부안내	17
1. <신진예술인지원> 사업	18
- 사업 개요 및 안내	
2.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22
- 사업 개요 및 안내	
- 공연예술분야	
- 시각예술분야	
- 문학분야	
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	31
- 사업 개요 및 안내	
- 레지던시 지원	
- 다원예술 지원	
4. <장애 · 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	42
- 사업 개요 및 안내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47
화성예술지원 접수시스템 안내	59

###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사업설명회 안내>

「신진예술인지원,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 일시: 2026. 2. 6.(금) 14:00

-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1층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 대연습실

- 문의: 예술지원팀(031-290-4666~9)

### 부정청탁 금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리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고유의 예술창작활동이 인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 정진을 응원하며,  
이번 지원 사업이 화성특례시 지역예술 생태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2026년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추진개요

1. 공모 일정 및 대상사업
2.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3. 지원신청 공통사항

# 01

## 공모일정 및 대상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2026년 1월 28일(수) ~ 2월 19일(목) 23:59까지

접수방법 화성예술인DB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b>도입</b> 신진예술인지원	예술인 지원	신진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총 15건 / 7천5백만원 개인 5백만원 지원 ※ 생애 단 한번 평생 1회 지급
<b>지속</b> 화성예술 활동지원	기획과정지원	예술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4백만원 정액지원)	총 45건 / 4억6천만원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4백만~1천5백만원 (단체) 5백만~2천만원
	예술활동지원	공연, 전시, 출간 등 예술 활동 지원	
<b>확장</b> 모든예술31 화성	레지던시지원	창작공간 지원 (평형에 따른 정액 지원)	총 3실 / 6천만원 평형별 정액 차등지원 (1실당 1천~2천만원 : 레지던시 사용료, 활동비 포함)
	다원예술지원	탈장르, 다매체, 예술중심 기술결합, 동시대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총 4건 / 4천만원 (개인) 5백만~1천만원 (단체) 9백만~1천5백만원
<b>특화</b>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 지원	장애, 이주예술인 특화 지원	장애 및 이주 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 지원	총 10건 / 9천만원 예산 내 차등지원 (개인) 최대 7백만원 (단체) 최대 1천백만원

·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불가  
 · 재단 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최종 선정 시 택1)  
 · 레지던시 지원 사업의 경우, 국내외, 민관 레지던시, 재단 활동지원,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등과 중복 선정 불가

# 02

##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 더 알기쉬운 예술지원 사업: 통합공모 추진

- 화성특례시 예술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 추진
- 화성특례시 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4개 예술지원사업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연번	사업명	공모기간	접수처
1	신진예술인지원	1. 28.(수) ~2. 19.(목)	화성예술인DB -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2	화성예술 활동지원		
3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4	장애인·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 예술생애주기(Arts Life Cycle) 기반 지원체계 구성

도입	지속	확장	특화
신진예술인 배양, 기획과정 지원	예술활동 지원	모든예술31 화성 - 레지던시 지원 - 다원예술 지원	장애·다문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 준	변경 후(2026년)
신진예술인지원	지원금액: 450만원	지원금액: 500만원
화성예술활동지원	<지원구분> · 예술기획: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기획 지원 · 예술활동: 공연, 전시, 출판 지원	<지원구분> · 기획과정: 예술 프로젝트의 기획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 · 예술활동: 공연, 전시, 출판 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예술기획 지원> · 지원금: 공연/전시/문학 차등지원 · 결과공유회: 2025. 9. 25.(목) * 기획지원 부문 선정자 필수 참여 · 차년도 <예술활동지원> 우선 선정	<기획과정 지원> · 지원금: 공연/전시/문학 정액지원 · 결과공유회: 2026. 12. 12.(예정) * 기획과정 부문 선정자 필수 참여 · 차년도 <예술활동지원> 선정 우대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활동이력있는 예술인(단체)의 장르 융합/협업 지원 지원금액: 전문 예술인(단체) * 생활문화동호회 선정 제외	만 19세 ~ 39세 경기도 시각예술인 대상 레지던시 지원 탈장르, 다매체, 기술결합 등 새로운 접근, 실현적 예술접근 형태의 다원예술 지원

## 예술현장을 고려하는 예술지원: 의견수렴을 통한 예술지원 현장의 편의성 증진

-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 운영 개선
- 지원금에 따른 예술인의 자부담금 편성 의무를 폐지하고, 자부담금 미정산 유지  
(단, 모든예술31에 한해서 자부담금 영수증 확인 필수)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사례비’ 인정 범위 확대 유지(기획, 연출 등 지원사업 참여 시 편성 가능)

##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및 평가 운영

-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모집 및 선정을 통한 전문성 있고 공정한 심의 진행
- 전문가 평가 및 관객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현장평가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지원금 교부 요건 강화

구분	내 용
교부내용	교부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회계검토	전 사업 외부 회계검토 필수 *문학 출간지원 부분 제외

## 예술인·시민과의 접점을 위한 환류기회 마련

- 화성예술지원 활동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회 진행

# 03 지원신청 공통사항

## 공통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공고일(2026. 1. 28.) 이전 화성특례시 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 (모든예술31-경기도 포함)
-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별 신청자격

신청예술인지원	청년 예술인 (만 19세~39세)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공연	공연활동실적을 보유하고 관련 예술활동이 인정되는 화성특례시 공연예술인 및 예술단체
	시각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문학	등단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경기	거주지 (소재지)	거주지   경기도 시각예술인 (소재지)   경기도 시각예술단체 (단, 단체의 경우 2~3인 구성으로 한정)
	례지던시 연령	연령   만 19세 ~ 39세 (단, 작업실 구성원 전원 해당)
	지원 형태	개인 2인 또는 단체 1곳당 작업실 1실 지원
	다원예술	탈장르, 다매체, 예술중심 기술결합, 동시에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 또는 소재 예술단체
장애인·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장애·이주 예술인(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의 경우, ‘이주 예술인’ 부문에 한하여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재외동포 신청 가능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정치단체, 학원, 교습소 및 이를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해당 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미반납 등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5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

- 선정 후 화성특례시(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 · 단체
- 지원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제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예술인권리보장법」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에 의해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개인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개인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 원작(문학 작품, 영상물, 음원 등)에 대한 저작권자(공동 저작권자 포함)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지원발표 이후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밝혀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화성특례시청,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목적한 바 아니더라도, 정치 · 종교 · 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 · 종교 · 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응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응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당해연도 동일 · 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동일한 예술인(또는 단체)은 동일한 사업으로는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인 '화성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전예술31', '신진예술인지원', '장애 · 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모든예술31 화성'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민 · 관 레지던시 지원사업 등  
과 중복 선정 불가

#### Q.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 A.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최종 선정 시 택1)

#### Q.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

- A. 단체 대표자와 개인 신청자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최종 선정 시 택1)

#### Q. 단체 구성원(참여자)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

- A. 가능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 접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마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는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2025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능합니다.

#### 현장 지원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
- 기간: 2026. 2. 2.(월) ~ 2. 13.(금) / 기간 한정 유의
- 시간: 평일 10시 ~ 16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회의실

\* 자택에서 지원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신 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주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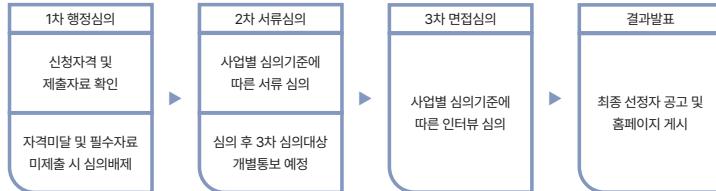
구분	일시	내 용
공고 및 접수	1. 28.(수) ~ 2.19.(목)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2.6.(금) 14:00	화성예술지원 사업설명회
행정심의	2.23.(월)	행정심의
서류심의	2.26.(목) ~ 3.3.(화)	서류심의
면접심의	3.9.(월) ~ 3.12.(금)	면접심의
최종 결과 발표	3.18.(수)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추진절차



\* 레지던시 지원의 경우, <사업운영>은 12월까지이며 <정산 및 결과보고>는 12월 16일까지

## 심의절차



## 사업문의

팀명	사업명	전화	문의시간
예술지원팀	화성예술활동지원	031-290-4666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신진예술인지원	031-290-4667	
	모든예술31	031-290-4668	
	장애·다문화 특화지원	031-290-4669	

# 사업별 세부안내

- <신진예술인지원> 사업
-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
- <장애 · 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

# 01

## 신진예술인지원 공모 안내

### 공모개요

- 사업 명: 2026 신진예술인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 청년예술인(개인)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 지원규모: 총 7,500만원 (15건 지원) ※ 생애 단 한번 평생 1회 지급

###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원과 관련한 내용 - 선정된 개인의 기획, 실현, 창작 준비과정 지원 (장기적인 활동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 실질 창작활동 지원 - 예술기획, 실험, 창작 등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과정을 지원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개인 예술인  5백만 원 (정액지원)	총 지원금: 75백만 원 선정규모: 15건

#### ● 준비금 작성여부

- 미술 재료 구입 후 작품을 완성, 아트상품 개발하여 아트마켓 참여하겠다. (적합)
- 미술작업을 위한 재료구매와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대관료로 사용하겠다. (적합)
- 독립서적 제작을 위한 리서치를 위해 조사 인터뷰 진행 후 책을 발간하여 납품하겠다. (적합)
- 공연 실황을 고화질 영상으로 활용 편집하여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외 축제 및 플랫폼에 진출하여 수의기반을 마련하겠다. (적합)
-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예술 기술(예: 판화 기법, 사운드 엔지니어링, 영상 템핑)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적용한 신작을 발표하겠다. (적합)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이들이 함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적합)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청년예술인: 만 19세 ~ 만 39세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의무사항

- 최종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연말 성과공유회 필수 참석 ※ 세부일정 선정자 대상 추후 공지

### 심의

#### ●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 ● 심의 기준

구분	기 준	배점
지원자격 평가 (20%)	지원자의 예술성, 창작성 및 전문성	10
	지원 예술인의 창작 및 활동 수행 역량	10
사업성 평가 (40%)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 이해도	10
	지원자의 활동계획과 본 사업과의 적합성	10
	본 사업 활동의 구체성 및 계획의 충실성	10
추진역량 (20%)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	10
	사업취지에 부합한 역량 보유 총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 가능성	20
기대효과 (20%)	향후 창작 및 활동의 성장가능성 및 지속발전가능성	20
총점		100

\*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기준 동일, 각 평가(심의) 단계 점수는 연계, 승계되지 아니하며 상호 무관함

## 심의

### ● 심의 절차



## 접수

### ● 필수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주요활동실적,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 접수 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파일명: 2026 신진예술인지원사업\_지원자명

\* 접수여부는 일괄 개별 문자 회신 예정(실시간 아님)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평가

### ● 현장 컨설팅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현장 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사례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주체	불가	전 분야	지원금 취소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포기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사업량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담당자와 상의한 경우 관계없음		1~2회: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변경 미신청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주관: 예술인명]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원 로고 삽입 필수

- "<2026 신진예술인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 (필수)

## 문의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7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02

##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 공모개요

- 사업명: 2026 화성예술활동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구분: 기획과정지원, 예술활동지원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지원규모: 총 4억 6천만원 (약 45건 지원)

### 공모구성

- [기획과정]: 예술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
- [예술활동]: 공연, 전시, 출판 지원

구분	예술분야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기획 과정 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단계 지원 기획, 리서치, 인수·음악·콘텐츠·디본 개발 등	개인, 단체 동일 4백만원(정액)
	시각예술	시각예술 프로젝트 위한 사전작업 지원 기획, 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문학분야	책 출간을 위한 사전작업 지원 기획, 투자, 연구 리서치, 인터뷰 등	

<기획과정> 지원 선정자 결과 발표 필수(12월 예정)

예술 활동 지원	공연예술	공연 예술 활동 지원	개인 예술인	
			평균 9백만원	최저 6백만원 최고 1천5만원
예술 활동 지원	시각예술	시각 예술 활동 및 전시 지원	예술단체	
			평균 1천3백만원	최저 1천만원 최고 2천만원
예술 활동 지원	문학분야	문학분야 출간지원 * 미발표 신작이 포함된 연내 출판계약 및 출간 의무	개인 예술인	
			4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5백만원
계			460백만원	

-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 \* 다른 프로젝트라도 1명의 신청자는 [기획과정지원] / [예술활동지원]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 신청 자격

구분	내 용	
공통신청자격	- 화성특례시 거주자 및 소재 단체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사업별 신청자격	공연	화성특례시 공연 예술인 및 예술단체
	시각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문학	등단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공고일 이전 거주(소재) 필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 시각예술 / 문학분야별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 추진

	구 분	구성인원
심의 위원회	· 공연예술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서비스, 다원 등)	4인
	· 시각예술 (회화, 설치, 조소, 공예/도예, 사진, 미디어 아트, 영상, 다원 등)	4인
	· 문학부문 (소설, 시, 수필, 비평, 회곡 등)	3인

#### - 심의 기준

구 분	자격평가	사업계획	작품내용	기대효과	사업실행	합계
서류심의	20	30	30	20	-	100
면접심의	20	-	30	20	30	100

###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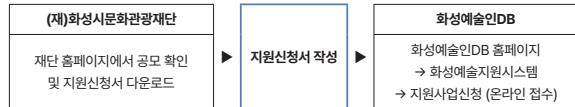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항목	조치사항	해당분야
사업주체 변경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환수) 가능	
사업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성과목표 50% 이상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식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주관: 예술인명]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 로고 삽입 필수
  - "<2026 화성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 (필수)

## 지원신청방법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02-1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 공모내용

- 기획과정지원: 공연예술 준비 · 기획과정 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지원: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활동 지원

### 지원규모

- 기획과정지원: 정액 4백만원
- 예술활동지원: 최저 6백만원 ~ 최고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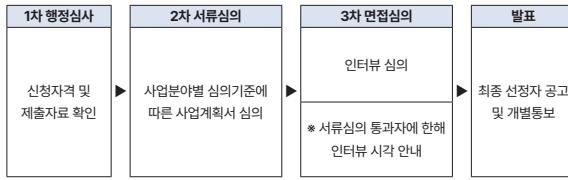
### 신청자격

화성특례시 관내에서 예술기획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백만원)						
기획 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단계 지원 (기획, 리서치, 안무, 음악, 대본, 개발 등)</li> <li>12회 결과공유회 참여 필수</li> </ul>	성과보고서	4백만원(정액)						
예술 활동 지원	<table border="1"> <tr> <td>공연 진행</td> <td>개인 예술인 평균 9백만원 최저 6백만원 최고 1천5만원</td> </tr> <tr> <td>·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영상(아카이빙 공개용 3분 이상) 및 공연 사진(고화질)</td> <td>예술단체 평균 3백만원 최저 1천만원 최고 2천만원</td> </tr> <tr> <td>성과보고서</td> <td></td> </tr> </table>	공연 진행	개인 예술인 평균 9백만원 최저 6백만원 최고 1천5만원	·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영상(아카이빙 공개용 3분 이상) 및 공연 사진(고화질)	예술단체 평균 3백만원 최저 1천만원 최고 2천만원	성과보고서			
공연 진행	개인 예술인 평균 9백만원 최저 6백만원 최고 1천5만원								
·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영상(아카이빙 공개용 3분 이상) 및 공연 사진(고화질)	예술단체 평균 3백만원 최저 1천만원 최고 2천만원								
성과보고서									

### 심의방식



\* 기획과정지원: 3차 면접심의 없음(2차 서류심의로 갈음)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접수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 유의할 점

- 기획과정지원, 예술활동지원 중 택 1하여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획과정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드창, 독무 등을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자부담 편성 여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02 -2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 공모내용

- 기획과정지원: 시각예술 준비 · 기획과정 · 연구과정 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지원: 시각예술 작품 전시 지원

## 지원규모

- 기획과정지원: 정액 4백만원
- 예술활동지원: 최저 6백만원 ~ 최고 1천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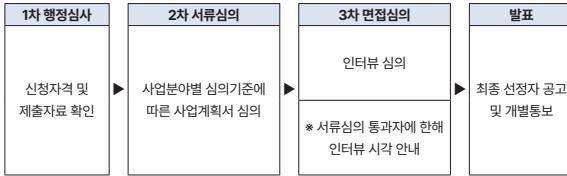
## 신청자격

화성특례시 관내에서 예술 활동을 진행할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백만원)
기획 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각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단계 지원 (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li><li>· 12월 결과발표회 참여 필수</li></ul>	성과보고서	4백만원(정액)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각 예술 전시/상영지원</li></ul>	전시/상영 진행	개인 예술인 평균 9백만원 최저 6백만원 최고 1천만원
		전시사진(고화질), 작품사진(고화질),	예술단체 평균 1천만원 최저 8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성과보고서	

## 심의방식



\* 기획과정지원: 3차 면접심의의 없음(2차 서류심의로 갈음)

## 02 -3 문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접수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 유의할 점

- 기획과정지원, 예술활동지원 중 택 1하여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획과정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등을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자부담 편성 여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공모내용

- 기획과정지원: 문학 창작준비 · 기획과정 · 연구과정 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지원: 미발표 신작이 포함된 출간비 지원(연내출간의무)

### 지원규모

- 기획과정지원: 정액 4백만원
- 예술활동지원: 최저 4백만원 ~ 최고 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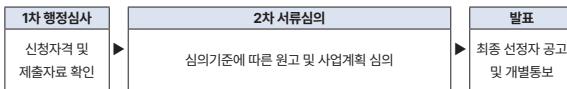
### 신청자격

화성특례시 관내에서 예술기획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필수	지원한도(백만원)								
기획 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콘텐츠 기획 개발단계 지원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li> <li>· 12월 결과발표회 참여 필수</li> </ul>	성과보고서	4백만원(정액)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 출간 진행</li> <li>· 출간지원</li> </ul>	<table border="1"> <tr> <td colspan="2">개인 예술인</td> </tr> <tr> <td>4백만원</td> <td>최저 4백만원 최고 5백만원</td> </tr> <tr> <td colspan="2">예술단체</td> </tr> <tr> <td>5백만원</td> <td>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td> </tr> </table>	개인 예술인		4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5백만원	예술단체		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개인 예술인											
4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5백만원										
예술단체											
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 심의방식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고 1부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선정자 필수 제출서류) 26년 8월까지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 예술활동지원 선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선정 후 개별안내

## 접수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 문화부문

### 정산안내

- 문학분야 사업종료일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종료 후, 12월 8일(화)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필수(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예술활동지원의 경우 지원금의 100%를 출간비용(출판사)으로 사용해야 함.
  - 정산서 내 지원금에 대한 영수 증빙 없이 아래 세 가지로 갈음
  - (출판물(결과물) 5권, 자체 확인증, 출판 계약서)
  - 외부회계검토 불필요

# 03

## 모든예술31 화성

### 공모개요

- 사업 명: 2026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구분: ① 레지던시 지원, ② 다원예술 지원
- 지원규모: 총1억원, 약10건 지원 (시비: 6천만 원 / 도비: 4천만 원)

### 공모구성

지원 구분	① 레지던시 지원	② 다원예술 지원
지원 내용	창작공간 지원 ※ 활동장소: 가니아뜰리에(경기도 양주시) 및 화성특례시	다원예술 지원 ※ 활동장소: 화성특례시
지원 분야	시각예술	다원예술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	연령 무관
지원 규모 (신청가능금액)	2인(3인) 1실 공유형태의 레지던시 공간 평형에 따른 (정액형) 차등 지원	사업계획 및 내용 등에 따른 차등지원  개인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단체 최소 900만원~ 최대 1,500만원

### 신청자격

구분	내 용		
공통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li> <li>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li> <li>기타 전문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li> </ul>		
사업별 신청자격	레지던시	거주지	경기도 시각예술인 (소재지) 경기도 시각예술단체 (단, 단체의 경우 2~3인 구성으로 한정)
		연령	만 19세 ~ 39세 (단, 작업실 구성원 전원 해당)
	다원예술	지원 형태	개인 2인 또는 단체 1곳당 작업실 1실 지원
		활동 특성	탈장르, 다매체, 예술중심 기술결합, 동시대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 또는 소재 예술단체

##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협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차년도 심의 반영 가능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공모사업별 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관객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전 분야	지원금 취소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한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지원금 취소(한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 1~2회: 주의 및 사후변경 신청 # 3회 이상: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 03-1 레지던시 지원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 2026년도 시범사업

관내 예술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만 19세~39세 이하 시각예술인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 공모개요

- 사업 명: 2026 모든예술31 화성 「레지던시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소재) 시각예술인(단체) \*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 지원내용: 시각예술 창·제작 작업실 지원 (2인(3인)당 1실 공유 형태 / 출퇴근형)
- 입주기간: 2026년 3월(예정) ~ 2026년 12월 (약 10개월)
- 지원규모: 총 6,000만원 (작업실 3실 지원)

## 공모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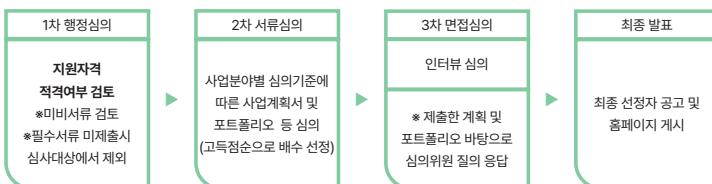
지원내용		지원규모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나 1 아뜰리에 (36평형) 	총지원금: 60백만 원 선정규모: 작업실 3실
	가나 2 아뜰리에 (29평형) 	

- \* 2인(3인) 1실 공유형태의 레지던시 공간평형에 따른 (정액형) 차등 지원
- \* 레지던시 사용 관련 (예상)비용이 지원금에 포함되어 교부 (단, 평형과 지원금액 변경 가능)
- \* 1인 단독신청의 경우, 심의를 통해 작업실 공유자(1인) 임의배정

## 신청자격

지원 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소재(거주) 시각예술인(단체) (*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 단체의 경우, 작업실 규모 제약에 따라 단체대표자 포함 2~3인 구성 단체로 한정 * 구성원 전원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로 한정		
	개인 자격	1인 단독 신청(또는) 2인 공동 신청	입주 목적 공동 프로젝트 또는 작업실 공유
	단체 자격	(2~3인 구성) 1개 단체지원必	입주 목적 공동 프로젝트 (의무사항)

## 심의절차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기준	서류심의	면접심의
필요성	창작공간 지원의 필요성/ 성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필요성·당위성</li> <li>창작활동 계획의 구체성·객관성</li> <li>성장 가능성</li> </ul>	30점	30점
창작 역량 (작품성)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경력 등 근거) 창작 역량의 우수성</li> <li>지원에 따른 창작역량 및 성과도출 기대도</li> </ul>	30점	30점
	시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의 유통가치</li> </ul>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경력)사항의 성실성</li> <li>창작역량(작품) 완성도</li> </ul>		
협업(력)성	협업 및 기관 협력에 대한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수용성</li> <li>공간 운영 기관 및 제휴협력 사업에 대한 연계성 협력·가능성</li> <li>작업실 소재지·여건 등에 대한 수용성</li> </ul>	40점	40점

●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아래 법정양식 제출 필수

구분	확인서류	제출	비고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소재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선정 확정 직후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명시 단체 소재지인 인정 (대표자 혹은 단체의 주소지 인정 불가)
	연령 확인(국민등록증)		* 선정 후, 소재지(자주지) 확인 과정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불가 시, 선정 취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구성원 전원 공고일 당일 기준, 만19세~39세 연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공통	교부신청		

접수 (3가지 필수제출 자료별 제출처)

구분	제출 방법	세부내용	제출방법														
① 화성 예술지원 시스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신청)자 명의, 기본정보, 사업운영계획, 예산(안), 사업성과(예측) 등 작성 후, 제출</li> </ul>															
② 지원 서식	화성 예술인DB 온라인 - 업로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기재사항 구성도</th> </tr> <tr> <th>개인의 경우</th> <th>단체의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활동계획서 (신청자 1인 또는 2인 각각 기본정보)</td> <td>활동계획서 (단체 공통)</td> </tr> <tr> <td>예산계획서 (직업실·실당 1건: 개인 공통) (평형별 지정양식 선택)</td> <td>예산계획서 (직업실 1인당 1건: 단체 공통) (평형별 지정양식 선택)</td> </tr> <tr> <td>활동실적 (실적+증빙자료 필수작성) →신청자 1인 또는 2인 각각 작성</td> <td>활동실적 (실적+증빙자료 필수작성) →① 단체 공통 →② 단체구성원별 각각</td> </tr> </tbody> </table>	기재사항 구성도		개인의 경우	단체의 경우	활동계획서 (신청자 1인 또는 2인 각각 기본정보)	활동계획서 (단체 공통)	예산계획서 (직업실·실당 1건: 개인 공통) (평형별 지정양식 선택)	예산계획서 (직업실 1인당 1건: 단체 공통) (평형별 지정양식 선택)	활동실적 (실적+증빙자료 필수작성) →신청자 1인 또는 2인 각각 작성	활동실적 (실적+증빙자료 필수작성) →① 단체 공통 →② 단체구성원별 각각	(화성 예술인 DB) - 화성 예술지원 시스템				
기재사항 구성도																	
개인의 경우	단체의 경우																
활동계획서 (신청자 1인 또는 2인 각각 기본정보)	활동계획서 (단체 공통)																
예산계획서 (직업실·실당 1건: 개인 공통) (평형별 지정양식 선택)	예산계획서 (직업실 1인당 1건: 단체 공통) (평형별 지정양식 선택)																
활동실적 (실적+증빙자료 필수작성) →신청자 1인 또는 2인 각각 작성	활동실적 (실적+증빙자료 필수작성) →① 단체 공통 →② 단체구성원별 각각																
③ 포트폴리오	이메일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파일 형식</th> <th colspan="2">제출 파일 개수</th> <th rowspan="2">분량</th> <th rowspan="2">용지 크기</th> <th rowspan="2">용량</th> </tr> <tr> <th>(신청 자격) 개인</th> <th>(신청 자격) 단체</th> </tr> </thead> <tbody> <tr> <td>PDF 파일</td> <td>1개 (1인 단체신청) 공동신청</td> <td>2개 (2인 구성원별 각 1인)</td> <td>3~4개 (단체 1개, 구성원별 각 1인)</td> <td>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td> <td>A4 (포트폴리오) 100MB 이하</td> </tr> </tbody> </table> <p>* 단, 표지에 (성명/생년월일/단체명) 표기 필수 * 작품명, 재료, 크기, 제작연도 등 캡션 작성 필수 * 한 페이지 속 이미지 및 영상 개수는 자율이나, 전체 용량 100MB이하 * 영상은 계정 정보와 (링크/패스워드 등) 함께 기재 * 파일형식, 용량 미준수 시 심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페이지 초과분 및 열리지 않는 링크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음</p>	파일 형식	제출 파일 개수		분량	용지 크기	용량	(신청 자격) 개인	(신청 자격) 단체	PDF 파일	1개 (1인 단체신청) 공동신청	2개 (2인 구성원별 각 1인)	3~4개 (단체 1개, 구성원별 각 1인)	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	A4 (포트폴리오) 100MB 이하	이메일 제출 (제출처: artsupport @hcf.or.kr)
파일 형식	제출 파일 개수			분량	용지 크기				용량								
	(신청 자격) 개인	(신청 자격) 단체															
PDF 파일	1개 (1인 단체신청) 공동신청	2개 (2인 구성원별 각 1인)	3~4개 (단체 1개, 구성원별 각 1인)	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	A4 (포트폴리오) 100MB 이하												

\* (지원서식)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접수 프로세스



##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현장 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2월 16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문화재단 / 주관: 예술인명 등]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 경기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6 모든 예술31 화성·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가나아뜰리에」 입주작가 사업에서 진행했던 작업을 외부에 발표 시 홍보물 및 크레딧에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모든 예술31 화성 지원', '화성예술지원, 경기문화재단' 등 문구 및 로고 필수 삽입
- 가나아뜰리에 등 레지던시 운영 기관 요청 시, 가나아뜰리에 로고 등 필수 삽입
  - \* 2026년도 연중 홍보물 제작할 경우,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 유의할 점

###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가나아뜰리에」 지원 자격요건

지원 부적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3월 ~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 국내외 타 기관 운영 레지던스 입주 예정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레지던시 퇴실일이 26년 2월 28일까지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6년 3월 1일 퇴실자부터는 지원 불가)</li> </ul> </li> <li>-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li> <li>- 총 · 중 · 고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자/졸업예비자/수료생 (학부 대학생 이상 지원 가능)</li> <li>-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으로 소속된 예술가</li> <li>- 성회룡·성폭력, 표절, 임금체불 및 기타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li> <li>- 순수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단체,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불문 타 기관 레지던시 충복입주 불가</li> <li>* 입주기간 내 전임교원으로 임명될 시, 입주 전여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경우 퇴실</li> <li>* 최종 선정시에도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입주 불가 또는 퇴실</li> </ul> </li> </ul>

###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가나아뜰리에」 입주작가 의무사항

공간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사용의무 준수: 매주 3일 이상 작업실 사용</li> <li>- 선정지원금으로 레지던시 관리비 및 사용료 납부</li> <li>- 레지던시 관리비 및 사용료와 별도로 전기세/수도세 납부 (지원금 편성 가능)</li> <li>- 공용공간 및 개인 작업실 사용 시 공간 사용수칙 준수</li> <li>* 환재방지, 원상복구, 위생적 사용 의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작업실 변경된 구조 및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원칙</li> <li>- 공용 공간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공용물품/장비 분실 시 원상복구(또는 배상) 원칙</li> <li>- 외부인 출입기준 등 공동생활 및 공간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가나아뜰리에 내부 수칙에 따름</li> </ul>
사업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아뜰리에 오픈스튜디오 필수 참여</li> <li>* 참여 프로그램 및 일정, 횟수 등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가나아뜰리에」 입주작가 사업에서 진행했던 작업을 외부에 발표 시 홍보물 및 크레딧에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모든 예술31 화성 지원', '화성예술지원, 경기문화재단' 등 문구 및 로고 필수 삽입</li> <li>- 가나아뜰리에 등 레지던시 운영 기관 요청 시, 가나아뜰리에 로고 등 필수 삽입</li> <li>- 제휴협력 사업 연계, 작가 홍보를 위한 작품(영상) 이미지 사용권,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li> <li>-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관 프로그램 참여(온라인테이션,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li> <li>-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관 성과아카이빙 전시 개최할 경우, 참여 의무</li> <li>- 가나아뜰리에 주관 프로그램 참여(오픈스튜디오, 작품발표회, 프로모션 행사 등)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사용 수칙, 공간 의무 사용기간 미준수 및 필수 프로그램 미참여시 패널티 적용</li> <li>- 매주 3일 이상 사용 기준 미충족시 패널티 적용</li> <li>- 퇴거 조치 대상 향후 3년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운영 공간 입주지원자격 제한</li> <li>- 입주기간 중 재단 승인 없이 중도 퇴실 시 향후 3년간 입주지원자격 제한</li> <li>-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및 가나아뜰리에」 지정 사업 (오픈스튜디오, 작품발표회, 프로모션 행사, 성과공유회, 컨설팅 등) 미참여 시, 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 가능</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지원 및 의무사항 등은 공간 운영사항에 따라 사업일정, 세부사항 등이 변동될 수 있음</li> <li>- 2026년 '레지던시 공모'는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모든 예술31: 다원예술 지원」 및 타 기관 운영 공간(레지던시, 작업실),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화성예술활동지원, 신진예술인지원, 장애·다문화예술인특화지원, 타 자치체 모든 예술31 등에 중복 선정 불가</li> <li>- 오픈스튜디오 등 내부 프로그램 참여, 공간 사용 기준, 외부인 출입 규정 등 준수</li> <li>- 작업실 평형 배정은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평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가나아뜰리에' 패널티

구분	상 세	조치사항
중복 입주	타 레지던시와 중복 입주	퇴거
허위사실 기재	지원 시, 제출한 경력, 수상실적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퇴거
시설 관리 및 안전수칙 위반	작업실 내 인화물질 방치,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 사용, 전력 오남용, 시설을 무단 개조 또는 파손	원상복구 및 퇴거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양도	작업활동 부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허가없이 외부인을 상주시키는 행위	퇴거 및 향후 레지던시 지원 제한
프로그램 참여 불이행	오픈스튜디오, 기획전시, 작가 워크숍 등 입주 시, 약속한 필수 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창작 지원금 회수
소음 및 민원 발생	과도한 작업 소음, 음주 가무 등 타 입주작가 칭찬활동 방해	경고 또는 퇴거 결정
공공성 저해	정치, 종교, 시행성 목적의 활동, 부적절 행위로 공공성을 저해하는 경우	퇴거

## 문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68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03-2 다원예술 지원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 공모개요

- 사업 명: 2026 모든예술31 화성 '다원예술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소재) 전문 예술인(단체)
- 지원내용: 텔장르, 디매체, 예술중심 기술결합, 동시대적 가치 탐구, 담론 확산 등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규모: 총 4,000만원 (4건 내외 지원)

##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기능액	지원규모
다원예술 지원 · 텔장르, 디매체, 예술중심 기술결합 등 · 실험적 전문예술문화활동	개인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총 지원금: 4천만원 선정 규모: 4건내외
	단체 최소 900만원~ 최대 1,500만원	
※활동장소: 화성특례시 관내 ※생활문화동호회 선정 제외	※ 사업 계획 및 구성, 규모에 따라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	
	※ 기획서를 통해 '다원예술'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함	

- \* 단순 행사'의 성격이짙은 사업이 아닌, 화성특례시민 대상 전문예술문화 공모
- \*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및 타 시군 '모든예술31' 사업, '2026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지원사업' 등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택1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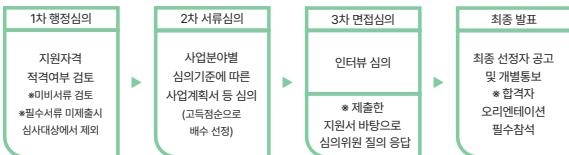
## 「지원자 신뢰 신장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장제」를 운영합니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서류	제출	비고
개인	주민등록초본	선정 확정 직후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명시 단체 소재지만 인정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소재지(거주지) 확인 과정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불가 시, 선정 취소
단체	소재지 확인용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통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교부신청	

## 심의

### ● 심의 기준



### ● 심의위원회 구성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 ● 심의 기준

심의지표		심의기준	서류심의	면접심의
작품성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 기획의도 명확성, 소재의 참신성	40	30
	사업주체의 발전기능성	- 예술적 성취 기대도		
	실험의지	- 창작 기획의 실험도		
계획의 총실성	계획의 구체성	- 기획/창작~발표(관객 개발) 전 과정의 세부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통	30	30
	예산 편성의 체계성	- 예산 편성의 구체성 및 체계성		
	참여인력 구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합성 (투입인력 구성, 규모, 기간)		
	참여예술인의 역량	- 참여인력의 역량		
기대효과	발전가능성	-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 - 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 가능성	30	20
	예술적 다양성 실현	- 화성특례시 예술생태계 다양성 및 자율적 기반 구축에 기여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 화성 지역예술활성화 기여도 평가 - 화성 지역 콘텐츠 반영		
사업 실행력	실현 능력	- 기획서를 구체화하여 작품을 현실화하는 능력이 있는가?	-	20

##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현장 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문화재단 / 주관: 예술인(단체)명 등]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 경기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6 모든 예술 31 화성: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 문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68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04

##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공모 안내

### 공모내용

- 사업 명: 2026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장애·이주 예술인(단체)
- 지원내용: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등 예술활동 프로젝트 운영 지원
- 지원규모: 총 9,000만원 (10건 내외 지원)

###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프로젝트 운영 - 예술 창작활동 운영 계획서 심의를 통해 지원 * 활동지역은 화성특례시로 한정함	개인 예술인	총지원금: 9,000만원(구천만원) 선정규모: 10건 내외
	최대 7백만원	
	예술단체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유형	신청 자격	
장애	개인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단체	- 구성원 중 화성특례시 거주 장애 예술인이 30% 이상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단체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불가)
다문화	다문화가족 전형	- 다문화가족 예술인 개인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 다문화가족 해당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 2호에 따른
	이주 외국인 전형	-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예술인 개인 - 가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비자 소지자 - 비자 만료일이 사업 종료 시점(26.10.31) 이후인 자 - 개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주외국인 해당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예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른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개인/단체 간 중복지원 불가 및 공고일 이전 기준 발급분만 인정, 유효기간 확인)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 ● 심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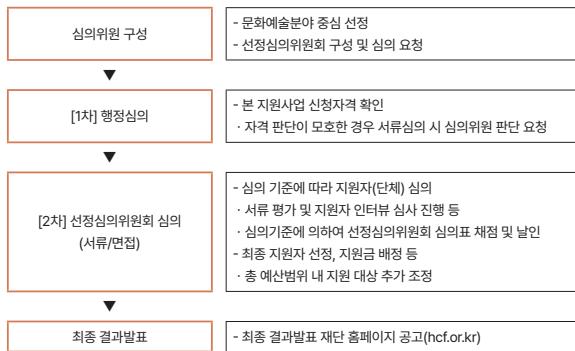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 ● 심의 기준

구분	기 준	배 점
자격 평가 (2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신청 자격을 적절히 갖추었으며, 사업 수행 인력 구성이 타당하다.	10 10
계획 평가 (40%)	활동계획(프로젝트)에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20 20
추진 역량 (20%)	해당 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제반 여건을 극복하고 예술적 성장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다.	10 10
기대 효과 (20%)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20
총 점		100

\*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기준 동일, 각 평가(심의) 단계 접수는 연계, 승계되지 아니하며 상호 무관함

● 심의 절차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개인 소개서 및 주요활동 실적(포트폴리오) 1부
- 단체 또는 개인 증빙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 방법 → 화성예술인DB([www.artist.hcf.or.kr](http://www.artist.hcf.or.kr)) 지원사업 시스템 -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첨부된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
- 업로드시 파일명: 장애아문화 특화지원\_지원자명(또는 단체명)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평가

● 모니터링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모니터링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3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명, 사업일시, 사업내용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 신청 필수

- '서비스'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변경 불가	전 분야	지원금 취소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주관: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예술지원 로고 삽입 필수

- "<2026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 (필수)

**문의**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69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지원금 집행 및 정산요령**



# 01

## 추진절차

단계	내용	시기	내 용
1	선정결과 공고	2026. 3. 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a href="http://www.hcf.or.kr">www.hcf.or.kr</a>) '공고' 선정 예술인(단체)</li> </ul>
2	중복지원 확인 및 사업포기	2026. 3. 19.(목) ~ 3. 27.(금) * 레지던시 지원의 경우, 3. 19. ~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대상 중복지원 확인</li> <li>●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양식 첨부)</li> <li>● 타 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절차 안내 요청 * 타 기관과 동일 사업 중복 지원 불가</li> </ul>
3	교부신청	2026. 3. 30.(월) ~ 4. 10.(금) * 화성예술활동 지원사업에 한해 상반기 접수 예정 * 레지던시 지원의 경우, 4월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관리를 위한 계좌 (신규계좌 개설 혹은 기존 계좌(0원) 사용) 및 체크카드 발급(보조금 전용카드 권장)</li> <li>● 결정된 지원금으로 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li> <li>● 산출근거는 지원금 운용지침(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심의 시 조건부 의결로 선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포기신청 기간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포기 신청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li> <li>●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금 교부 예정 (단, 재단 상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li> </ul>
4	사업수행	사업기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교부 후 사업수행</li> </ul>
5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기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및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진행</li> <li>● 사업별 관객 만족도 조사 진행 적극 참여 의무</li> </ul>
6	사업변경	해당 사항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신청 이후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li> <li>●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담당자와 논의 후 사업일 이전에 변경 신청서 송부</li> <li>●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포기)이 발생한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절차 안내 요청 * 사업종료 이후 사업 변경 불가</li> </ul>
7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레지던시 지원사업에 한해 2026.12.16.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등록 후 제출, 잔액이자 반납</li> <li>● 지원사업의 수행과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마감되어야 함 * 사업완료 기한: 26. 10. 31.(토) * 사업정산 기한: 26. 11. 30.(월) * 단, 레지던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기한: 26년 12월] [사업정산 기한: 26. 12. 16.(수)]</li> <li>● 기간 내 정산자료 미제출 시 추후 지원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li> </ul>

# 02

## 교부신청

### 지원금 계좌 (체크카드) 준비

-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 준비
-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 하여 사용  
(은행 제한 없음/보조금 전용카드 권장)
  - 기존 계좌 사용 시 교부신청서 내에 잔액 0원이 찍힌 통장 사본 첨부 요망
  - 체크카드 사용이 필요 없으면 발급 생략

- ② 1개 사업 당 1개의 전용 계좌(체크카드) 사용 원칙
- 동일한 계좌로 타 사업 및 타 기관 지원금을 함께 받아 사용할 수 없음

- ③ 예금주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은 '본인 실명'으로
-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 가능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함께 명기 권장)  
ex. 김OO(극단OOO)

- ④ 지원금 집행은 거래처로 직접 '계좌이체' 혹은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전만 인정
- 지원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본인 및 단체의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음

- ⑤ 자부담금은 지원금 계좌와 별도 분리하여 관리
-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반드시 타 계좌에서 사용 및 집행.
  - 자부담금 지출 시에는 개인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자부담금 관련 정산 없음(단, 모든 예술31도 회계법인 정산은 없으나, 영수증 확인 진행)

- ⑥ 사업 종료 후 5년간 통장 보관 必 (재단 요청시 제출)
- 통장 표지에 지원연도,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을 메모하여 보관

## ● 교부신청

제출처	artsupport@hcf.or.kr
제출기간	2026. 3. 30.(월) ~ 4. 10.(금) ※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상하반기 접수 ※ 레지던시 지원의 경우, 4월 3일까지
제출서류	교부신청서(재단 지정서식, 별도첨부) 한글 파일, 최종 사업계획서 (공모 시 제출했던 계획서의 최종버전) 1부, 지원금 계좌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 등
지원금 교부시기	접수된 교부신청 승인 이후 14일 이내 (재단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사업수행기한	~ 2026.10.31.(토) ※ 작품발표, 지원금 집행 완료를 포함한 기 ※ 레지던시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12월까지

- 예산 작성시에는 **03.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 담당자가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단의 지원금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담당자가 승인한 최종 교부신청서 서류를 기준으로 교부신청 진행

## ●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 지원금의 집행은 교부신청 시 작성한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사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업일 이전에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 시 사업계획'과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의 변경으로 당초 사업의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에도 선정된 사업이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03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부합하여 보편화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자부담 편성 차율
- \* 단, 다원예술 지원도 편성 자율이나, 편성 시 지원금의 10% 내외 편성 권고

## &lt;예산편성 불가 항목&gt;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장비 구입),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예비비, 감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하도급 비용으로 편성하는 경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침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 배정받은 창작공간 관련 공과금과 임대료 등 허용

## 회계검사수수료

- 모든 사업에 회계검사를 실시 (문학 출간부분 제외)
- 회계검사는 재단이 지정한 회계검사법인이 선정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과 세부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임

- 이에 모든 선정 예술인(단체)은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아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필수 편성비함

사업규모	수수료	비 고
5백만원 미만	160,000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10,000원	
1천만원 ~ 1천 5백만원 미만	260,000원	
1천 5백만원 ~ 2천만원 미만	310,000원	
2천만원 ~ 2천 5백만원 미만	360,000원	
2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410,000원	

회계검사 대상금액은 재단 지원금  
결정액의 사업 규모로 산출함  
\* 자부담금은 회계법인 정산에서 제외

## 세목별 집행기준

제목	내 용	집행수단 및 정산증빙자료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 (일반 개인 대상)</li> <li>원천세(사업3.3%/기타8.8%)를 포함한 금액 작성</li> <li>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0.8%) 포함</li> <li>즉, 원천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작성</li> <li>지급 시에는 원천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체 (이후 원천징수 및 보험료 신고 납부 필수)</li> <li>대표자 혹은 개인 사례비는 지원금의 단체: 20%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편성 가능 개인: 20%(최대 150만원 한도) 까지 편성 가능</li> </ul>	<p>계좌이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필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표준계약서</li> <li>사례비지급내역서</li> <li>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li> <li>국세 납부 확인서</li> <li>지방세 납부 확인서</li> </ol> </li> <li>● <b>필요 시</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li> <li>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li> <li>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li> </ol> </li> </ul>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인쇄, 디자인, 광고비 등</li> <li>작품집, 도록, 연구서적, 프로그램 복 등 도서 인쇄물의 발간 비용</li> </ul>	<p>체크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카드 영수증</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p>계좌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전자(세금)계산서</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제작비에 해당하는 세목</li> <li>사업자 대상 각종 문화예술 용역 등</li> <li>'재료비' 세목과 혼동 없도록 유의 (예)소품을 전문업체에 수주 제작 = 제작비 소품을 직접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 = 재료비</li> </ul>	<p>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카드 영수증</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p>계좌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전자(세금)계산서</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품, 도구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재료</li> <li>편성불가: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장비구입</li> </ul>	<p>체크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카드 영수증</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p>계좌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전자(세금)계산서</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제목	내 용	집행수단 및 정산증빙자료
기타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예산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용</li> <li>● <b>필수 회계검사수료:</b> 기준표 참고하여 편성</li> <li>예술인고용보험료: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사업주 부담금 0.8% 미리 편성</li> <li>회의운영비: 지원금의 3% 이하로 편성 가능 ⇒ 단체의 경우 자부담으로 책정 권고</li> <li>편성불가: 행사기념품, 경품, 교통비, 유류비</li> <li>(해당사항있는 경우) 저작권료 편성</li> <li>(레지던시 지원사업에 한해) 작업실 수도세, 전기세 등 편성 가능</li> </ul>	<p>카드집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카드 영수증</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p>계좌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전자(세금)계산서</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공통	회의운영비 집행 시 ● <b>필수 회의/행사일지</b>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연장, 전시장, 작업실, 스튜디오, 연습실, 회의실 등 각종 공간 대여 및 부대시설 사용료</li> <li>편성불가: 일상적인 운영경비 (사무실 임대료, 작업실 월세),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시설비) 등</li> <li>(레지던시 지원사업에 한해) 작업실 사용료 편성 가능</li> </ul>	<p>체크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카드 영수증</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li>대관계약서</li> </ol> <p>계좌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전자(세금)계산서</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li>대관계약서</li> </ol>
임차료	● 장비, 소품 대여비 등	<p>체크카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크카드 영수증</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p>계좌이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체확인증</li> <li>전자(세금)계산서</li> <li>견적서(거래명세서)</li> </ol>

## 집행수단 별 증빙자료

집행 수단	구분	필요서류	내 용	발급방법
체크 카드	필수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 결제일시, 카드번호, 거래점명이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처, 카드사
	해당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에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 등)이 미표시된 경우 혹은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처
		회의 및 행사일지	기타운영비-회의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계좌 이체	필수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번호, 이체일시, 받는 이의 성명과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전자가 아닌 수기 및 종이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거래처
	해당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이 미표시된 경우 혹은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체와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	거래처
		회의 및 행사일지	기타운영비-회의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계좌 이체 (사례비)	필수	이체확인증	받는 이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 가능)	은행
		표준계약서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상황에 맞게 자유 변경 가능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필수 기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서식
		사례비 지급내역서	사례비 지급 대상자의 정보를 일괄 작성	재단 지정서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관련 필수제출자료	홈택스, 세무서
		국세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3% / 기타소득 8%	홈택스, 은행, 세무서
	해당 시	지방세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0.3% / 기타소득 0.8%	위택스, 은행, 세무서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사례비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 간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홈택스,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본인 혹은 대표자 사례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원납 증명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납부 시 필수제출자료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을 교부받기 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 지원금 집행은 거래처에 직접 '계좌이체' 혹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거부) 업체와의 거래 자양
- 지원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집행은 불가
-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집행과 동시에 발급받고,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금 통장, 지출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 온라인 결제 시 유의사항

- 계좌이체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부득이하게 무통장입금 진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쇼핑몰 사이트 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금함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사용 시 계좌를 연결하여 충전 결제 금지
- 캐시백, 체크카드 할인 등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이자'로 처리

### ● 지원금 집행 불인정 항목

- 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매출전표)을 발급하지 않은 집행 건 (사례비 외)
-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 필수★

-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작성일자가 교부신청서 상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
- 현금 입출금,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 지원금 교부전에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선집행하는 경우 (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후 일괄 발급 (모든 서류와 자료 간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해야 함)
-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법적 외 사용금지)
- 친족 간 혹은 출연진(참여자) 관련, 소유 업체 등과의 거래

### ● 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형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형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형주점
- 위생업종: 아·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圭장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금 교부 시

### 서약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 6호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함.

- ①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 ④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
- ⑥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⑦ 보조금 청산서를 특정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사례비 집행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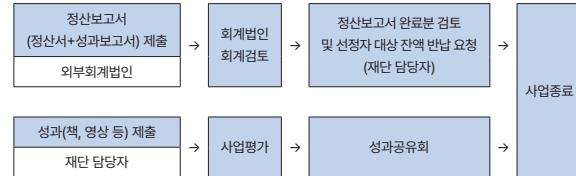
### 유의사항

- 사례비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를 말함
- 타인에게 사례비 세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으로 원천세가 포함됨
- 또한,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음
- 사례비를 편성할 때는 원천세와 고용보험료(예술인 부담분 0.8%)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0.8%를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별도 편성
- 사례비를 실제 지급할 때에는 원천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자에게 이체해야 함
- 이후 원천세와 고용보험료는 지급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 \* 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의 2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음.
- \* 개인 본인 사례비의 경우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 시 본인 사례비가 인정되며, 지원금의 20%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음.

# 04

##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흐름도



### 정산보고서 작성

- 사업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정산서+성과보고서) 작성 완료하여 송부
- 서식 별도 첨부
- 최종 정산 검토 완료 11월 30일까지 완료 필수
- \* 단, 레지던시 지원사업 선정자의 경우 12월 16일까지

###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원금 잔액 1원 이상, 이자 발생액 1원 이상 발생 시 재단에 반납 (자부담금은 해당 없음)
- 반납 계좌 정보는 재단의 각 사업 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회계법인 검토 종료 이후 월별 일괄 안내 예정)

### 정산단계 안내

- [예술단체/개인] 실적보고서 작성 및 회계법인 송부 → 회계법인 검토 → 회계법인 확정 및 검토보고서 송부(11월 30일까지 마무리 必) → 재단 확정 → [예술단체/개인] 재단에게 안내해주는 계좌로 정해진 일자에 잔액 및 이자 반납 → [예술단체/개인] 회계법인으로 최종 실적보고서 원본 송부 & 재단으로 성과를 송부(이메일 제출 가능)
- \* 단, 레지던시 지원의 경우 12월 16일까지 회계법인 확정 및 검토보고서 송부 완료

구분	제출서류	비 고
필수	1. 정산보고서 2. 각종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재단서식 별도 첨부
필수	3. 성과물 (영상, 사진 등)	공연의 경우 10분 내외 영상 제출 필수, 전시의 경우 작품 및 전시전경 고화질 사진 필수

# 화성예술지원 접수프로그램 안내



# 01

## 접수프로그램 안내

### 목차

#### 01 공모 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알림마당 -  
공고]에서 공모를 확인하세요.

#### 02 주의사항

신청하기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03 본인인증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세요.

#### 04 지원서작성/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세요.

#### 05 신청 조회/수정

제출한 사업 신청서 조회/수정이  
가능합니다.

#### 06 문의사항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 02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버뉴일

지원하는 사업별 신청서 서식을 확인하세요.

각 사업별 첨부파일 양식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관련 안내는 기재하신 신청자 연락처를 통해 전달되오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지원신청 마감 이후에는 지원신청서의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지원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미리 최종 제출해주세요.

### 01 공모내용 확인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버뉴일



### 03 본인 인증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버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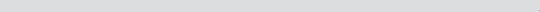


**1**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휴대폰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본인 인증	2026 회성예술지원 회성예술지원시스템 인증 안내 메뉴얼			
<p><b>1 PASS</b></p> <p>인증방법 선택하기(PASS)</p> <p>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해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r> <td style="width: 33%;">SKT</td> <td style="width: 33%;">KT</td> <td style="width: 33%;">LG U+</td> </tr> </table> <p style="margin-top: 20px;">① 활용한 사용자 확인</p>	SKT	KT	LG U+	<p><b>2 PASS</b></p> <p>인증방법을 선택해주세요</p> <p>PASS 인증 (모바일 전화번호 및 한글자리)</p> <p>OR코드 인증 (QR코드 및 휴대폰 번호)</p> <p style="margin-top: 20px;">② 활용한 사용자 확인</p>	<p><b>3 PASS</b></p> <p>인증방법 선택해주세요</p> <p>이름</p> <p>생년월일</p> <p>휴대폰 번호</p> <p>114728</p> <p>인증번호</p> <p style="margin-top: 20px;">③ 활용한 사용자 확인</p>
SKT	KT	LG U+			
<p><b>4 PASS</b></p> <p>인증번호 입력해주세요</p> <p>467693</p> <p>확인</p>					

# 04 지원서 작성 - 기본정보

04	지원서 작성 - 작성 순서도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작일		
				
<b>STEP 01</b> 	<b>STEP 02</b> 	<b>STEP 03</b> 	<b>STEP 04</b> 	<b>STEP 05</b> 
기본정보 입력	사업운영계획 입력	예산계획 입력	사업성과(예측) 입력	파일첨부 / 최종 제출

## 04 지원서 작성 - 기본정보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매뉴얼

- 개인의 생년월일과 등록소재지가 기본 설정됩니다.
- 등록소재지는 화성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모든 예술기사 사업의 화성시 및 지역의 지원자는 등록소재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단체의 경우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04 지원서 작성 - 기본정보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매뉴얼

- 경력 및 활동 실적 입력
- 경력 및 활동 실적을 입력합니다.  
최소 3개년 입력하여 주세요.

- 경력 선택
- 창작선택  
- 화성예술활동지원의 경우 1차 창작에 따라  
상의가 진행되므로, 본인만 원하는 창작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창작은 선택 후에 2차 창작 선택이  
가능합니다.

## 04 지원서 작성 - 사업운영계획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매뉴얼

- 각 사업별 신청 파일  
양식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모든 예술기사(리지던시) 한정 사업수행기간  
- 2026년 12월까지 사업수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예술기사(리지던시) 화성예술활동지원 기획  
기획, 시장예술인의 입장에 디플로마예술인활동  
지원의 사업수행기간 - 10월 31일까지  
사업수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원신청금액 + 경액인 경우 금액에  
불가합니다.

각 사업별 지원기금 금액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 04 지원서 작성 - 예산계획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안내 매뉴얼

- 지원신청한 금액  
내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과목별 5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화성예술 수수료는 지원신청 금액별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모든 예술기사(리지던시) 한정 예술기사  
사업은 '가평연예미각기동성장팀',  
'예술기획팀'으로 지원신청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4 지원서 작성 - 예산계획

2026 회성예술지원  
회성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 신청 안내 메뉴얼

지원 신청 금액과  
입력된 지원금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후 작성해주세요.

확인

지원신청한 금액 내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금액과 입력된 지원금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자부담 - 자부담 현황 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 04 지원서 작성 - 최종제출하기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6회

The screenshot shows a confirmation message: "최종 제출이 완료 되었습니다." (Final submission completed). It includes a QR code and a timestamp: "2026-09-12 10:00:00". Below the message, it says "최종제출시에 문자로 지원신청 인증 문자가 발송됩니다." (A verification text message will be sent via text when the final submission is made).

신청서 제출이 완료 되었습니다.

## 05 사업 신청 조회/수정/취소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6회

The screenshot shows a section titled "사업신청 조회/수정/취소" (Search/Modify/Cancellation of Application). It includes a message: "신청하신 사업 선택 후 조회 바랍니다." (Please check after selecting the applied business). Below this, there are three numbered steps: 1. 최종 제출 완료 후 가능합니다. (Available after final submission), 2. 신청자 정보 입력 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enter the password you set when entering your information), and 3.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재설정 가능합니다. (You can reset it through the password recovery function).

제출 완료 후  
사업신청 조회/수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 05 사업 신청 조회/수정/취소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6회

This screenshot shows two buttons: "제출 취소 후 수정 (데이터 보존)" (Modification after cancellation (data retention)) and "제출 취소 및 삭제 (데이터 한전 삭제)" (Modification and deletion (data deletion)). A "다음" (Next) button is also present.

A message asks if the user wants to "수정 하시겠습니까?" (Modify?). It includes a "수정" (Modify) button.

A message asks if the user wants to "삭제된 신청서는 복구 불가합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Deleted applications cannot be recovered.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It includes a "삭제" (Delete) button.

제출 완료 후  
사업신청 조회/수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제출 취소 후 수정 또는 제출 취소 및 삭제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수정 완료 후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제출을 해야 지원신청이 됩니다.

## 06 문의사항

2026 화성예술지원  
화성예술지원시스템지원사업 신청 안내 제6회

문의처

### 예술지원팀

화성예술활동지원  
신청예술인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모든예술  
장애인문화예술인육회지원  
031-290-4666  
031-290-4667  
031-290-4668  
031-290-4669

### 문의가능시간

평일 10시 ~ 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제)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6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발 행처**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발 행 일** 2026. 2. 6.

**주최·주관**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후 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해당)

**예술지원팀**

화성예술활동지원 031-290-4666

신진예술인지원 031-290-4667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031-290-4668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031-290-4669

**디자인/제작** 진디자인

\* 본 책자에 기재되어있는 공모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친구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을 추가해주시면

예술지원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